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9. 15 선고 2021가단503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8. 18.
판 결 선 고 2021. 9. 1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9. 10.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10. 2. 접수 제339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외 회사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계약일	보증금액(원)	대출기한	대출은행	연대보증인
2017. 1. 4.	594,000,000	2020. 1. 3.	D 은행 군산지점	B
2017. 3. 31.	450,000,000	2027. 3. 30.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3) 소외 회사는 원고의 보증 하에 D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았으나, 각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D은행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보증계약일	대위변제일	대출은행	대위변제금액
2017. 1. 4.	2019. 11. 29.	D 은행 군산지점	601,531,334
2017. 3. 31.			271,600,174

4) 원고는 위 대위변제에 따라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합계 899,618,735원(= 대위변제금 873,131,508원 + 채권보전비용 26,487,227원)의 채권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73,131,50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1. 29.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원고의 B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나. 증여계약의 체결

B은 2019. 10. 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1,188,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및 224,000,000원 상당의 군산시 E 외 1 필지 F아파트 G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 채무액이 899,618,735원에 달하였다. 즉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군산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불과 2일 후인 2019. 10. 4. 소외 회사가 부실처리가 되었으며, 그로부터 1달 20일 후인 2019. 11. 29.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구상금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 위 연대보증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증여한 행위는 B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의 심화를 이르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목포시 H 토지는 원래 부모님의 재산이었고, 부모님 사망 후 가족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 위 토지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다만 피고에게 청각장애가

있어 타인에게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위 토지의 1/20 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을 B 명의로 등기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위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위 제2의 나. 3)항의 주장을 피고에게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선행하여 보더라도, 수익자인 피고는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위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B와 피고 사이의 친밀한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민

별 지(부동산목록)

1. 전라남도 목포시 대 33㎡

- 지분 10분의 1 -

- 이 상 -

